



# 익산시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행자 : 익산시장  
발행처 : 비전홍보담당관

선 람	기 관 의 장

## 【 규 칙 】

- 익산시규칙 제506호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 입 법 예 고 】

- 익산시고시 제2010-840호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3
- 익산시공고 제2010-870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12
- 익산시공고 제2010-88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

## 【 공 고 】

- 익산시공고 제2010-59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22
- 익산시공고 제2010-863호 공인 폐기 공고 ..... 25

회 람								
--------	--	--	--	--	--	--	--	--

익산시규칙 제506호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5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익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를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년” 을 “2년”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년” 을 “2년” 으로 한다.

###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익산시 시민 참여예산 운영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익산시 시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u>」----- -----.</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u>1년</u>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③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 ----- <u>2년</u>-----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u>1년</u>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 ⑧ (생략)</p>	<p>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u>2년</u>----- ----- ----- --. ② ~ ⑧ (현행과 같음)</p>

익산시공고 제2010-840호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 익 산 시 장

###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가. 시에서 사용하는 e-hojo시스템과 시금고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간에 현행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이체 및 지급명령 등을 전자금융시스템 도입에 따라 지출업무의 지급처리 전산화를 위한 관련 규칙의 개정이 필요함.
- 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금액 제한없이 위임하고 있는 과오납금 반환 위임범위를 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정하여 횡령비리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자 함.
- 다. 재정사항의 합의를 할 경우 기획예산과장 및 회계과장 합의사항을 예산담당 및 경리담당, 계약관리담당으로 확대하여 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예방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지출시스템을 포함)를 포함하여 지출원의 지급명령,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의 통지,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52조의 1)

- 나. 자금수급계획, 지급명령, 채주의 영수인, 송금통지,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지급의 증명, 송금지급절차,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처리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각 조 후단에 신설(안 제49조제2항, 안 제53조제2항, 안 제56조제3항, 안 제58조, 안 제80조제3항, 안 제112조, 안 제113조, 안 제121조제2항)하고, 세입세출일계표, 세입세출월계표 처리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각 조에 신설(안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3항)
- 다.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처리하고 있는 과오납금 반환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정(안 제4조)
- 가. 재정사항의 합의를 할 경우 회계과장 합의를 회계과장 및 경리담당, 계약관리담당으로, 기획예산과장 합의를 기획예산과장 및 예산담당으로 확대(안 제22조)

###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753 익산시 시청로 1 회계과  
(전화 : 063-859-5666, FAX : 859-5056)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회계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3-859-5666)

### 4.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과오납금의 반환”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오납금 반환”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획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을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및 계약관리담당의 합의를, 제3호 내지 제7호 경비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및 경리담당의 합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을 “기획예산과장 및 예산담당의 합의를”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1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1(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전자지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과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제5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1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제80조제3항·제112조 및 제113조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1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1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2조의1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2조의1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1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52조의1(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전자지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출원의 지급명령</li> <li>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li> <li>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li> <li>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li> <li>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li> </ol> <p>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p> <p>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 명령서 전송</li> <li>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li> <li>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 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① ----- ----- ----- -----.</p> <p>② 제52조의1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p> <p>① ~ ② (생략)</p> <p>&lt;신 설&gt;</p>	<p>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52조의1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p> <p>① (생략)</p> <p>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4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후단 신설&gt;</p>	<p>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이 경우 제52조의1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익산시공고 제2010-870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규제의 강화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규제 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익 산 시 장

가. 이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 (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규제영향분석서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753 익산시 시청로 30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전화 063-859-5592, FAX 063-859-509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 제 영 향 분 석 서

##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익산시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담당자 김민수							
4.근거법령명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관 련 규제수				
5.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영향분석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 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조례개정 이후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신축자 산출불가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7,8,9,10] ○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 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규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7,8,9,10] ○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 제8호 관련) ※ 우리시 조계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의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내용

-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건축규제가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이내일 경우로만 규정되어있어 그 외의 지역에서 과다 경쟁 및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주거지역경계 70미터 이내의 규정만 있어서 주변 여건 및 필요에 따라 건축을 제한할 수 없음
-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규제는 종전의 규제를 유지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건축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고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함

#### 다. 규제의 목표설정

-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로 인한 주변 주거환경 훼손의 방지
- 종전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 있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건축규제의 방안 마련

###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규제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우리 익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민이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의 위상에 맞추고, 도시화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제도적으로 필요불가결함은 시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 상업지역 인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입지를 전문성있는 위원회를 통하여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과다한 경쟁 및 불합리한 입지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

#### 가. 기존 규제에 대체 가능 여부

- 대체의 효용성 없음

#### 나.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다른 규제없음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다른 규제없음

####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없음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건축행위 제한(범위내 숙박시설신축 제한)으로 토지이용행위 기회 축소

#####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제한으로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 및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업의 과잉 경쟁 및 숙박시설 난립 예방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규제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 없음

####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없음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동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조례로써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09. 12. 15 ~ 2010. 1. 8.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 없음

##### 나. 규제의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용도지역안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규제강화에 따른 별도의 조직·인력 및 예산확보는 필요없음

#####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기존 조직·인력·예산으로 규제업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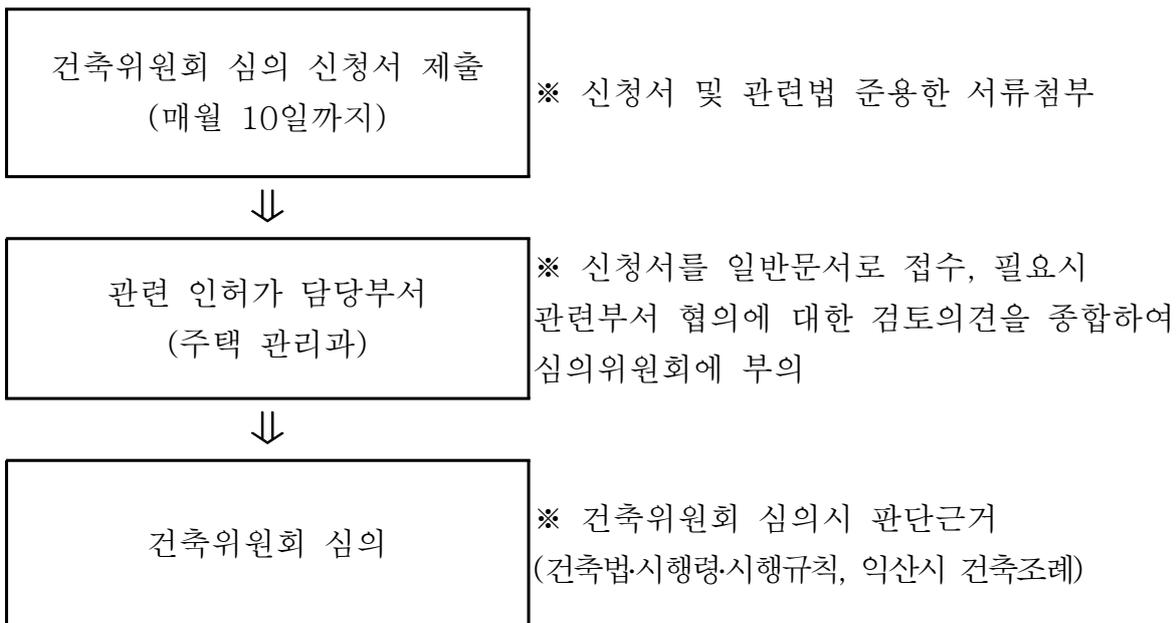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익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시킨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는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지막주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상업지역내 일반 숙박시설 입지의 적정성 여부는 익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
- 처리절차



익산시공고 제2010-88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 월 15 일

익 산 시 장

1. 개정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2010. 3. 22)에 따른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일치되도록 하고, 부서간 사무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행정의 권한과 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담당관 임용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 1)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나. 감사담당관 임용 시행일 및 경과 조치(안 부칙)

- 1) 시 행 일 : 2010. 7. 01
- 2)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 업무 신설(안 제9조)

- 1) 회계과에 “계약심사 업무 전반” 사무 신설

###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 - 751 익산시 시청로 1 익산시 행정지원과  
(전화 : 859-5731, FAX : 859-505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 (전화 : 859-5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2010. 3. 22)에 따른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일치되도록 하고, 부서간 사무 한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행정의 권한과 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감사담당관 임용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 1)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나. 감사담당관 임용 시행일 및 경과 조치(안 부칙)

- 1) 시 행 일 : 2010. 7. 01
- 2)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 업무 신설(안 제9조)

- 1) 회계과에 “계약심사 업무 전반” 사무 신설

### 3. 참고 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 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부 : 여

###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 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계약심사 업무 전반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임용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 ----- -----.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 ~ 제8조 (생략)	제5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회계과) ----- -----.
1. ~ 31. (생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 설>	32. 계약심사 업무 전반
제10조 ~ 제45조 (생략)	제10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익산시공고 제2010-59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익산시장 [인]

1.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금마	리도	중서선	201호	용순리 산29-9	용순리 645-8	2.36	-	8	7	도로확·포장

2. 사업시행기간 : 2010. 4 ~ 2011. 12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 램 기 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 램 장 소 : 익산시청 건설과(☎ 063-859-5534)

4. 토지세목조서 : 붙임내역참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공사명 : 금마 종서선(공수부대-미륵초교)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토지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읍면동	당초 지번			지번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금마면 용순리	57-1	답	20	57-1	20	소진봉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587				
2	금마면 용순리	58-6	전	615	58-9	48			소남규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미등기
3	금마면 용순리	69-4	구	271	69-6	19	소남달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40				
4	금마면 용순리	421-2	도로	73	421-2	73			홍계준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미등기
5	금마면 용순리	421-3	도로	99	421-3	99			홍계준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미등기
6	금마면 용순리	422-2	도로	63	422-2	63			이겸태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미등기
7	금마면 용순리	430-1	도로	23	430-1	23	소병곤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55				
8	금마면 용순리	434-3	도로	126	434-3	126			소병문	금마면 신용리 588		미등기
9	금마면 용순리	435	도로	66	435	66	황희태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65				
10	금마면 용순리	450-2	도로	102	450-2	102	황희태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65				
11	금마면 용순리	567-1	답	3	567-1	3	이재은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667				
12	금마면 용순리	568-2	도로	215	568-2	215			소병학	익산시 금마면 서변리		미등기
13	금마면 용순리	568-3	도로	50	568-3	50			소병학	익산시 금마면 서변리		미등기
14	금마면 용순리	572-1	답	2,248	572-4	350	김인임 외 6인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362				
15	금마면 용순리	579-2	도로	36	579-2	36	김정순	완주군 조촌면 화전리 520				
16	금마면 용순리	634-2	도로	33	634-2	33	정용석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596				

##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물건조서

공사명 : 금마 종서선(공수부대-미륵초교)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 위	물건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금마면 용순리	571-1	하우스 무궁화	울타리	132 10	m <sup>2</sup> m						
2	금마면 용순리	580-1	무궁화	울타리	30	m						
3	금마면 용순리	산34-2외	잔디		347	m <sup>2</sup>	윤석중	금마면 서고도리 48				
4	금마면 용순리	산88-1	대나무		45	m <sup>2</sup>						
5	금마면 용순리	산91외	인삼 (시설포함)		1,181	m <sup>2</sup>						
6	금마면 용순리	569-2	관정		1	식						

익산시공고 제2010-863호

## 공 인 폐 기 공 고

익산시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폐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

익 산 시 장

### □ 폐기공인내역

구분	공인명	인영	서체	규격 (mm)	폐기사유	폐기년월일	관수부서
폐기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출납원		한글 전서체	20×20 정사각형	조례폐지	2010.5.13	청소과